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2164 판결 [건물명도등 청구의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13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
나. 2022. 5. 29.부터 위 제1의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전호재

별지